제228회 거창군의회 <임 시 회>

조 례 안 상 정 (조례 12건)

거 창 군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쪽수
2017-117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17-118	거창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7-119	정부 및 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13
2017-120	거창군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17-121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7
2017-122	거창군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5
2017-123	거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1
2017-124	거창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5
2017-125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2017-126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3
2017-127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9
2017-128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9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117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우리군 전입효과를 강화하고자 전입세대에 대한 용어정의를 변경하고, 1인세대 전입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인구증가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전입세대의 정의를 변경함.(안 제3조제6호)
 - 다른 시·군·구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 ⇒ 다른 시·군·구에 2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 1개월 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이상이 한꺼번에 전입하는 세대
 - ⇒ <u>6개월 이상</u>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이상이 한꺼번에 전입하는 세대
- 나. 전입세대 전입대학생 학자금 지원 근거 마련함(안 제20조제1항제8호)
 - 학기별 10만원(재학 중 최대 4회)
- 다. 1인 전입세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제2항)
 - 지원내용: 2명 이상 전입세대 지원규모의 2분의 1을 지원함
 - -전입정착금: 15만원이내 -귀농세대 영농정착금: 250만원이내
 - -빈집정비지원: 150만원이내 -자동차번호판변경비용: 1/2지원이내
 - -쓰레기종량제봉투: 20리터 22매이내 -문화예술관람권: 2장이내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제9조, 「지방재정법」제17조
- 나. 예산조치: 2018년 예산 129백만원 확보예정
-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민원봉사실, 행정과

문화관광과, 도시건축과, 농촌진흥과, 평생교육센터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7. 9. 21.~10. 11.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도내 개정완료(3): 의령, 함양, 남해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3년 이상"을 "2년 이상"으로, "1개월 이상"을 "6개월 이상" 으로 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제7호·제10호 중 "범위 내의"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8. 전입세대 전입고등학생 및 전입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평생교육센터) 가. 전입고등학생: 수업료 전액
- 나. 전입대학생: 학기별 10만원(재학 중 최대 4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명이 세대를 구성하여 전입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9호의 지원규모의 2분의 1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입대학생은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전입세대 지원 중일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례) 제20조제1항제8호 개정규정은 2018년 1학기부터 적용하고, 제20조제2항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전입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행 개 정 안 혂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 제3조(정의) ---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생략) 1.~5. (현행과 같음) 6. "전입세대"란 전입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개월 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이 한꺼번에 전입(1명 전입 후 6개월 이내에 1명 이상이 세대 편입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세대를 말한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전입대학생"이란 군내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입하는 대학생을 말한다. 9. "전입고등학생"이란 군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입하는 고등학생을 말한다. 10.~11. (생략) 10.~11. (현행과 같음) 제20조(지원내용 및 업무관장) ① --제20조(지원내용 및 업무관장) 군수는 인구증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내용·규모·절차 등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전입세대에 대한 30만원 범위 내의 전입 정착금 또는 기념품 지원(행정과) 2. 귀농세대에 대한 500만원 범위 내의 영농정착금 지원(농업기술센터) 3. 전입세대에 대한 300만원 범위 내의 빈집정비 지원금 지원(도시건축과) 4. 전입세대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변경 비용 전액 지원(민원봉사실) 5. 전입세대에 대한 20리터 45매 이내의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다만, 전입세대가 원하면 지원금액 내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 규격변경 가능) (환경과)

- 6. 전입대학생에 대한 10만원 **범위 내의** 장학금 지원(평생교육센터)
- 7. 전입고등학생에 대한 10만원 **범위 내의** 장학금 지원(평생교육센터)
- 8. 전입세대 고등학생에 대한 분기별 50만원 범위에서 지원(평생교육센터)
- 9. 전입세대에 대한 5장 이내의 문화예술 관람권 지원(문화관광과)
- 10. 국적취득자에 대한 50만원 범위 내의 지원금 지원(평생교육센터)
- 11. 그 밖에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소관부서) **〈신 설〉**

-	6 <u>범위에서</u>
	7 <u>범위에서</u>
	8. 전입세대 전입고등학생 및 전입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평생교육센터) 가. 전입고등학생: 수업료 전액 나. 전입대학생: 학기별 10만원(재학 중
	최대 4회) 9
	10 <u>범위에서</u>
	11
	부터 제5호까지. 제9호의 지워규모의

2분의 1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입

대학생은 제외한다.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전입세대 전입대학생 학자금(제20조제1항제8호)
 - 학기별 10만원(연간 2회)
- 1인 전입세대 지원(제20조제2항)
 - -2명 이상 전입세대 지원규모의 2분의 1지원

2. 비용추계의 결과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계
	전입대학생	1	1	1	1	1	5
세출	1인 전입세대	128	128	128	128	128	640
	계	129	129	129	129	129	645

※ 산출기초: 전입세대 대학생 5명(추정) × 20만원(연간) = 1백만원 (* 현재 고등학생 13명 지원중) 1인 전입세대 800명 × 16만원(연간) = 128백만원

3. 관련 의견

○ 우리군 전입효과를 강화하고자 전입자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인구증가를 도모하고자 함.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임 영 만

거창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118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군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수행 중 제기된 형사 또는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소신 있는 업무 추진과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함. ※ 공무원노조 요청사항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을 변경함.
- 거창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 거창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나. 고문변호사 위촉대상에 법무법인 추가함(안 제2조)
 - 변호사 ⇒ 변호사 및 법무법인
- 다. 정당한 공무수행 중 제기된 민사 및 형사사건에 대한 공무원의 방어 비용 지워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 지원 대상·절차·액수·요건, 반납 기준
- 라. 용어순화 및 문장정비 함.(안 제2조·제3조·제5조·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제9조·제22조

나. 예산조치: 2018년 예산 5백만원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7. 8. 16.~9. 5.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도내 개정완료(6): 창원, 거제, 사천, 함안, 함양, 합천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를 "거창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고문 변호사의 운영과 거창군 소속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및 법무법인 중에서 2명 이내의 거창군 고문 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직무 등)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자문 및 수행
- 2.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에 관한 자문
- 3. 법령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한 자문
- 4. 그 밖에 고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제5조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을 "제3조에 따라 자문한 사항은 별지 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을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조(공무원 방어비용 지원)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직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적법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민사 또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군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5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해당 공무원에 대한 변호(고문변호사 여부 가리지 않는다)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실제 지출한 변호 비용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민사사건의 경우 소제기 당시, 형사사건의 경우 공소제기 당시 군 소속 공무원일 것
 - 2. 민사사건의 경우 청구포기, 각하 또는 기각으로 확정되었을 것
 - 3. 형사사건
 - 가. 불기소처분 될 경우에는 사유가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각하로 확정되었을 것
 - 나. 공소제기 되었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제325조의 무죄판결로 확정 되거나, 같은 법 제3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었을 것
 -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 1.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변호사선임계약서 사본
 - 3. 변호사선임료 지급 증명서
 - 4.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④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 1. 법원의 판결 및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경우
 - 2.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보험사 그 밖의 제3자로부터 방어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 ⑤ 제4항에 따라 반납할 금액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완료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거창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거창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고문 변호사(이하 "변호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고문 변호사의 운영과 거창군 소속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군수는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3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군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제3조(직무 등)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자문 및 수행 2.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에 관한 자문 3. 법령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고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 할 수 없다.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u>제3조의</u>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u>제3조에</u> 따라 자문한 사항은 별지 서식에 따른
제6조(수당) ① <u>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u> 예산의 <u>범위안</u> 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현 행	개 정 안
현 행 <u>〈신 설〉</u>	

거창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제7조(공무원 방어비용 지원): 적법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민사 또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5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해당 공무원에 대한 변호비용으로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예산 5백만원으로 연 5천만원 이하에 해당

4.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정부 및 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17~119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 조례에서는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나 군 행정기구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음.
- 「정부조직법」개정안이 시행(`17.7.26.)되어 행정자치부, 미래창조 과학부 등 주요 정부부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중앙부처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와 군 조직개편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를 <u>일괄 개정</u>하여 별도의 입법절차로 인한 비경제성·비능률성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정비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과제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중앙부처 명칭 변경함(안 제1조~제11조)
 - 11개 조례 16건
 - 행정자치부 ⇒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 중소기업청 ⇒ 중소벤처기업부
 -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소방방재청 ⇒ 소방청
 - 산업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
 - 교유과학기술부⇒ 교육부
 - 내무부 ⇒ 행정안전부
- 나. 군 조직개편 사항 반영함(안 제12조·제13조)
 - 3개 조례 6건
 - 시설관리사업소 ⇒ 체육시설사업소
 - 주민생활지원실 ⇒ 복지정책과
 - 건설교통과 ⇒ 경제교통과
 - 문화관광과 ⇒ 평생교육센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정부조직법」제25조, 제26조, 제34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의: 해당 부서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9. 7.~9. 2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개정현황: 입법예고(창원시)

거창군 조례 제 호

정부 및 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1조(「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개정)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조(「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의 개정)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8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제4조제4항 및 제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3조(「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의 개정)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거창군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보도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안전행정부령"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제5조(「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6조(「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7조(「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의 개정)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8조(「거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거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항 중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한다.

제9조(「거창군 소비자보호조례」의 개정) 거창군 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0조(「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의 개정) 거창군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11조(「거창군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발행조례」의 개정) 거창군 상수도 사업비 지방채 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내무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2조(「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의 개정)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시설관리사업소장"을 "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 "스포츠마케팅"을 "기금관련"으로 하고, 제8조제4항 중 "시설관리사업소장"을 "체육시설 사업소장"으로 한다. 제13조(「거창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의 개정) 거창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소관부서란 중 "주민생활지원실"을 "복지정책과"로 "건설교통과"를 "경제교통과"로 한다.

제14조(「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립한마음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평생교육센터소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120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상위법령 제명 개정에 따라 위임법명을 변경하고,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의 제명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나.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안 제3조)
 - 민원봉사과장 ⇒ 민원봉사실장
- 다. 위원의 해촉 사유 구체화함(안 제4조제2항)
- 라. 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신설함(안 제10조)
- 마. 운영세칙을 정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7조의2, 제88조~96조.「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제3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7. 8. 17.~9. 6.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개정현황

○ 개정완료(9): 창원시, 통영시, 진주시, 거제시, 김해시, 남해군,

창녕군, 함안군, 함양군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지명위원회조례"를 "거창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원회"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봉사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제3호를 삭제하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중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주사가 된다."를 "두고 간사는 지명

업무 담당공무워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심의·의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경상남도 지명위원회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제목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을 "(현장조사 등)"으로 하고 "위원회는"을 "위원회의 위원장은"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혅 했 개 정 안 거창군 지명위원회조례 거창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측량수로조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에서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지명의 제정, 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거창군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거창군 지명위원회(이하 <삭 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군 관할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제3조(구성)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제1항에 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 워으로 구성한다. 따른 거창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 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1. 민원봉사과장, 도시건축과장 1.민원봉사실장. ----2.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삭 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혀 했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생 략) 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 정 안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현행과 같음)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대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u>두되, 간사는 지명</u>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간사) -----

-----<u>두고,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u>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0조(지명의 조사) 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의 법정 및 행정 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 하여 복합으로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
-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간 기재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직원 또는 위원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10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심의·의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경상남도 지명위원회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9조 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____ 개 정 안 혂 행 제11조(현장조사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1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을 하거나 그 밖의 중요 사항을 심의 • 의결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워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삭 제>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 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 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 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121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수 없다.' 규정에 따라 의무부담 조항을 삭제하여 전부개정 하고자 함.

※ 법제처와 행안부 자치법규 정비과제

2. 주요내용

- 가.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는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규정 삭제
 - 관급공사에 대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제출 등 의무 부과 조항 삭제(구 제4조제4항·제5항)
 - 임금지급 현황 자체평가 결과를 공개할 경우 부진 기업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여 새로운 규제로 적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구 제11조)
- 나. 계약대상자의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내용을 삭제(구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 제12조)
- 다.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신설함(안 제6조)
- 라. 문장 정비 및 용어 순화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제9조·제22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9. 15.~10. 10.

- (나) 예고결과: 해당사항 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도내 개정현황

완료(5): 진주, 사천, 산청, 함양, 합천

(7) 법제처 컨설팅사례 반영

거창군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이 발주하는 공사·용역에 대하여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고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관급공사"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을 말한다.
- 2. "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이나 용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4. "도급"이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
- 5. "하도급"이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
- 6.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 7. "건설기계 임대료"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하는 건설기계 임대차 등의 경비를 말한다.
- 8. "체불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과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계를 사용한 후 미지급된 임대료를 말한다.
- 9. "공사감독자등"란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를 말한다.
- 10. "수급인"이란 군으로부터 공사나 용역을 도급받은 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자를 포함한다.

- 11.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나 용역을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 12.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란 군이 도급을 받은 자에게 공사나 용역 대금 지급 시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시간으로 지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1. 사업비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2. 그 밖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불임금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임금 합의서 등 확인) 공사감독자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이하 "임금합의서"라 한다) 등을 확인하여 계약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 제5조(대금 지급의 사전통지) 군수는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공사나 용역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지급 계획을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의 적용 등) ① 군수는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의 보완 및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군은 5천만원 이상인 모든 관급공사에 대하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 2. 그 밖에 각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군수가 대금 지급 확인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군수는 각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금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9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 군의 예산·재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 제7조(신고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관급 공사 체불임금등과 저가하도급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근로자 상담) 군수는 체불임금등과 관련하여 근로자 등의 상담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상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협조체계 구축) 군수는 관급공사에서 체불임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건설업협회와 건설업자 및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고지의 의무) 군수는 관급공사 계약 시 수급인, 하수급인에게 「거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반드시 서면 고지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계약을 체결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ᅰᄼᅡ사ᄀ	상호 및 대표자	
계약상대자	영업소 소재지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사의 종류	
하수급인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공사의 종류	
		도 급 액:
하도급 내용	하도급 내용	하도급액:
		하도급률:
	하도급계약상의 직접 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도급(하도급 포함)계약을 할 때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노무비 전용 통장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수급인

제1조(근거) 이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제3조(지급범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 제4조(업무처리 절차) 지방계약 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합의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 제5조(노무비 전용 통장)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전용 통장을 변경할 때에는 수급자는 발주처의 승인, 하수급 업체는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남은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 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무비 구분관리제 실시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이 요청하거나 동의하면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제9조(성실의무) 수급인(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명세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거짓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발주기관: 거창군 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인)

[별지 제2호서식]

임 금 지급 및 청구 명세서 건설기계 임대료

○ 공사명:

계약상대자	월별	구분	성명(근로자, 소유자)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	서명
소계								
하도급사1	월별	구분	성명(근로자, 소유자)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	서명
소계								
하도급사2	월별	구분	성명(근로자, 소유자)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	서명
소계								
합계								

- ※ 1. 구분: 계좌입금, 현금지급 구분
 - 2. 현금지급은 근로자의 서명 날인, 계좌입금은 서명 생략(은행 이체증명 등 증명자료 첨부)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확인	부서	직급	성명	비고
공사감독자			(인)	
감 리 원			(인)	

거창군 (분임)재무관 귀하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017~122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재난현장의 효과적인 대응 및 재난 안전 강화를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나.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을 정함.(안 제2조)
- 다.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촉해제, 위원장의 직무를 정함.(안 제3조~제6조)
-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위촉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 라. 위원회 운영을 정함.(안 제7조)
- 회의개최: 대규모 재난발생 시, 재적위원 4분의 1이상 소집요청 시
- 의결정족: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마. 협조요청 및 운영세칙을 정함(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

나. 예산조치: '18년 예산 630천원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7. 9. 12.~10. 10.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도내 조례 제정현황
- 제정완료(6): 거제시, 창원시, 김해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 입법예고(5): 통영시, 의령군, 합천군, 함안군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 3. 평상시 재난 예방을 위한 재난과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재난대응 민관협력방안 협의
 -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 6.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부군수
 - 2.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 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 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라. 그 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협조요청)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전관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비용발생 요인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위원수당: 630천원(7만원*30명*3회)

작성자: 안전총괄과장 이 건 호

거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123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자연재해대책법」개정으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범위를 해당시설 주변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시설물의 지붕으로까지 확대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여 눈이나 얼음으로 인한 군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조례 규제개선 50선 정비

2. 주요내용

- 가. 제설·제빙 책임순위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제설·제빙 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
 - (현행)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추가) 시설물의 지붕
 -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1항 개정사항 반영('14.12.30.)
- 다. 제설·제빙 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4조)
- 라. 제설·제빙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5조)
- 시설물의 지붕 제설·제빙 방법, 작업 중지와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추가 마. 제설·제빙 도구 등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비치해야 할 제설·제빙 도구를 명시하고,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추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7. 9. 28.~10. 18.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도내 개정완료: 창원시
- (7) 법제처 입법컨설팅: 전부 반영함.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설·제빙 책임 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 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 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
 - 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
- 제3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 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 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4조(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 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 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
- 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
 - 가. 지붕에 25센티미터(고지대, 산간지역 등 특정 지형조건인 경우에는 37.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일 것
 - 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것
- 제5조(제설·제빙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 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
 - 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
 - ②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보행자, 차량 및 제설·제빙을 하는 사람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 도구 등의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삽·빗자루 등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제설·제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124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도로법」및「농어촌도로 정비법」개정으로 손궤자부담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부과된 사례가 없고, 기존의 원인자부담금제도로 보완이 가능하여 손궤자부담금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손궤자부담금 조항 삭제.(구 제4조·제5조)
- 나. 원인자부담금 선납규정을 공사 개시 전 납부로 규제 완화.(안 제2조)
- 다. 원인자부담금 반환사유 및 금액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법」제91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7. 9. 29.~10. 18.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도내 개정완료(16개):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합천
- (7) 법제처 입법컨설팅 사례 반영함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91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원인자부담금 징수)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제1항에 따라 도로공사의 원인자에게 그 도로 공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원인자부담금은 도로공사 개시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나행위가 종료된 후에 납부할 수 있다.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사 등
 -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등 군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위한 공사 등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공사 등
 -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나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제3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①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타공사나 타행위의 시행자가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제외한다.
 - 1. 직접파손부분(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공사비

- 2. 간접파손부분(직접파손부분에 인접한 부분으로 추후에 파손이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공사비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굴착표준 최적 기울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에 따르고,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의 표준 단면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반환 및 추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1. 도로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납입한 원인자부담금 전부
 - 2. 도로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 줄어든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에 대한 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
 -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가 인정하는 금액②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보한 날로 시행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도로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로공사가 완료된 경우의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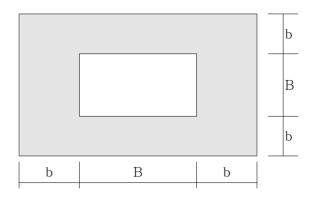
[별표 1]

도로공사 굴착 표준 최적 기울기 및 복구비용 산출기준(제3조제2항 관련)

- 1. 표준 최적 기울기 1:0.1 (기존 도로는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간주함)
- 2. 최소굴착면적, 최소굴착폭, 간접파손영향구간 및 복구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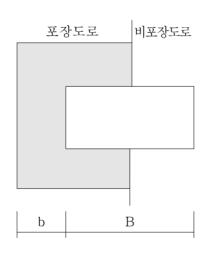
	차 도	보	도	
구 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블록 및 화강석류	투수성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류	
최소굴착면적	0.7미터×0.7미터	0.8미터×0.8미터	0.7미터×0.7미터	
최소굴착폭	0.7미터	0.8미터	0.7미터	
간접파손영향 구간	·최소굴착 및 소규모굴착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5m 구간 ·굴착깊이가 2.5미터 미만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미터 구간 (굴착 시 절단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방 0.6미터까지의 범위) ·굴착깊이가 2.5미터 이상 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 5분의1까지 범위 (굴착 시 파일, 토류벽 등의 미설치 또는 절단기 미사용 시는 0.3미터씩 추가 가산)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또는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 아스팔트포장구간에 한정하여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미터 구간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4 미터 구간 ·보도·차도경계 인접부분에 각종 전봇대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굴착 2.25제곱미터(1.5미터 ×1.5미터) ※ 이 경우 굴착면적은 1미터×1미터로 계산한다.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다만, 각종 전봇대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보도·차도경계 인접부 굴착의 경우에는 블록 및 타일류의 경우에 준한다.	
직접	직접파손부분 복구비	직접파손부분 복구비	직접파손부분 복구비	
복 구 비 ^{간접} 용	·아스팔트포장도로 -파손영향구간의 중층 및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파손영향구간의 덧씌 우기(두께 5센티미터) 비용 ·콘크리트포장도로 -파손영향구간의 콘크리트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파손영향구간의 아스 팔트 덧씌우기(5센티미터) 비용 ·아스팔트 덧씌우기(5센티미터) 비용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기존 노면 이 콘크리트인 경우) -파손영향구간의 콘크리트 및 아스 팔트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파손영향구간의 아스 팔트 도청시공비 -굴착구간 및 파손영향구간의 아스 팔트 덧씌우기(5센티미터) 비용	·블록류 -굴착구간 및 파손영향 구간의 표층 시공비 (전체 표층용 블록양의 30퍼센트를 새로운 블록 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화강석류 -파손영향구간의 콘크 리트기초 시공비 -굴착구간 및 파손영향 구간의 표층 시공비	·파손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굴착구간 및 파손영향구 간의 덧씌우기(4센티미터)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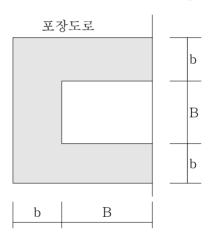
- 3. 굴착폭(B), 간접파손영향구간(b) 및 간접복구단면
 - 가. 굴착폭(B) 및 간접파손영향(b)
 - 1) 표준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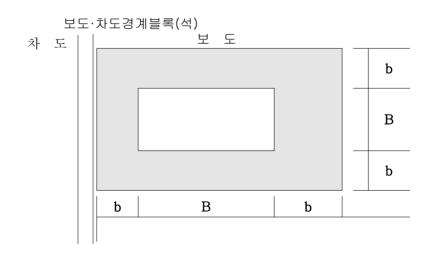
2)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및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 평면도(아스팔트, 콘크리트)

도로경계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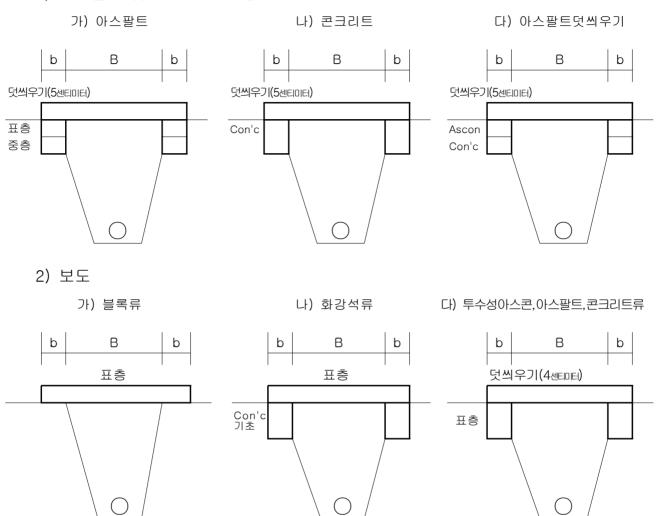


3) 보도·차도경계선 인접부 굴착 평면도(보도구간)



나. 간접복구단면

1)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4. 간접복구비 미부과 대상

- 가. 사업시행자가 굴착구간의 도로폭 전체를 복구하는 경우
- 나. 보도구간에서 굴착폭 외의 남은 보도폭 합계가 1미터 미만일 경우. 이 경우 보도폭 전체를 복구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도로관리청에 복구를 의뢰할 때에는 직접파손부분 복구비 및 직 접파손부분을 제외한 남은 구간의 표층 시공비를 직접복구비용으로 징수한다.
- 다. 차도구간에서 사업시행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굴착구간의 간접파손영향구간을 초과하여 차로 단위로 평삭 정비하는 경우
- 라. 둘 이상 사업시행자가 동일 구간에서 동시 병행굴착 시 간접파손영향구간이 중첩되는 경우 감소부분
- 마. 사업시행자가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개축신설공사 계획에 따라 병행시행을 위하여 굴착하는 경우
- 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또는 개량을 위해서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 사. 보도·차도경계블록(석), 도로경계블록(석), 측구,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파손에 대하여 복구하는 경우. 다만, 사업시행자가 도로관리청에 복구를 의뢰할 경우에는 해당 연도 시설단가에 따라 직접복구비를 산정 부과한다.

[별표 2]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제3조제2항 관련)

종 별	부 호	적 용	단	면	적 용	범 위	
		丑	층:	5센티터			
	A - 1	중	층:	15센EDIE	폭 20미터 이상 도로		
	A 1	기	층:	20센티터	즉 20미디 이징 포포		
아스팔트		보 조 기	층:	40센티터			
포장도로		丑	층:	5센티터			
	A -2	중	층:	7.5센티터	폭 20미터 미만 도로		
	A 2	기	층:	20센티터			
		보 조 기	층:	30센EDE			
	C - 1	표	층:	20센티터	폭 6미터 이상 도로		
콘크리트	0 1	보 조 기	층:	20센티터	7 00101 018 111		
포장도로	C - 2	丑	층:	15센EDIE	폭 6미터 미만 도로		
		보 조 기	층:	15dene	1 35151 512 ==		
	_	표 층 (아 스		5dene			
아스팔트	C A - 1	표 층 (콘크리		20센티터	폭 6미터 이상 도로	기존 노면이	
더		보 조 기	_층: `	20센티터		콘크리트포장인	
포장도로		표 층 (아 스		5센티터		경우	
	C A - 2	표 층 (콘크리		15dene	폭 6미터 미만 도로		
		보 조 기	_층: 	15 MEDIE			
	일반보도블록	일반보도블록		6센EDI터			
		모	래: -	4센EDI터			
		보 조 기	_층: 	10dene			
	소형고압블록	소형고압블록		6센티터			
		모	래:	4센EDI터			
		보 조 기	층: - -		다만, 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보 도	화 강 석	丑		3~5dene	경우는 사당동맹의 유무에 따라 모르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1:3):	4센EDE		있다.	
				10 MEDIE			
		보 조 기 투수성아스콘	층: ㅠᄎ·	10 MEDIE			
	 트人서 () L 人코	기 기	ㅍᅙ· 층:	4센티미터 10센티미터			
	투수성아스콘	모	등 . 래:	5센티티터			
	그 밖의 사항	기존보도의 단					
	n no	보도블록:		<u> </u>			
		포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프		3 MEDIE	 다만, 기울기가 10분의	1 NI산 구가으 모래	
	블 록 포 장	고 콘크리트:		10 dene	터 (3센티터) 대신 붙임모르터(4센티터) 적		
		보조기		15 dene			
보도횡단		표 층 (아스		5 MEDIE	기층은 와이어 메쉬 포	<u></u> 항	
차량출입시	아스팔트포장	기 층 (콘크리			기층과 표층 사이 텍코.		
설		표 층 (콘크리			기층과 표층 사이 그라		
	콘크리트포장	기 층 (골	재):		기용되 표정 기하 크리 리막(비접착식) 적용	(0 , 1) & [
		기존 보도횡단			1(-13 1 1) 13		
	그 밖의 사항	단면에 준한다.					
비포	 장 도 로				군수가 유지관리하	는 비포장 도로	
	<u> </u>	기존 시설대	로 원	 상복구			
					I .		

- 비고: 1.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은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 양의 30퍼센트는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2. 기층·보조기층의 재료와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125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도로법 시행령」개정으로 2개 연도 이상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연간점용료의 증가율을 전년도 점용료의 100분의 10으로 완화함에 따라 그사항을 반영하여 군민의 경제적 비용을 경감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2개 연도 이상 도로 점용 시 점용료 조정산식 완화함(안 제5조)
 - (현행) 「도로법 시행령」별표 4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
- (변경) 연간 점용료의 증가율을 전년도 점용료의 100분의 10으로 제한
- 나. 법령 중복 재기재 사항 삭제함(안 제2조, 제6조)
 - 점용료 부과대상, 점용료 감면
 - ※근거: 도로법」제61조제2항·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제1항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다. 과오납된 농어촌도로 점용료 반환규정 신설함(안 제6조)
- 라. 그 밖에 의미를 명확히 하고 용어 순화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도로법」제66조, 「도로법 시행령」제69조·제71조·제74조·별표 3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 제19조의2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7. 9. 29.~10. 18.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도내 개정완료(11개):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고성, 산청, 합천, 함양
- (7) 법제처 입법컨설팅 사례 반영함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도로법」제66조"를 "「도로법」제66조제4항"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제2항 중 "각 호에 해당"을 "각 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으로 "점용료"를 "농어촌도로 점용료"로 한다.

제5조 중 "도로"를 "농어촌도로"로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영 별표 4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를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로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과오납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반환) 군수는 과오납된 농어촌도로 점용

료가 있으면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u>관하여</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u>「도로법」제66조</u> <u>제4항</u> <u>필요한</u>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 라 한다)는 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삭 제>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 (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① (생 략) ② 군수는 법 제66조제2항 <u>각 호에</u>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u>점용료</u>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u>점용료</u> 를 반환하여야한다. 이 경우 점용료 반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71조제5항 및 제6항을 따른다. ③ (생 략)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5조(점용료의 조정) <u>도로</u> 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제5조(점용료의 조정) <u>농어촌도로</u>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 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영 별표 4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으로 한다.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 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점용료의 감면) 점용료 감면은 <삭 제> 법 제68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에 따른다.

〈신 설〉 제6조(과오납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반환) 군수는 과오납된 농어촌도로 점용료가 있으면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 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금액의 단위: 원)

	(금액의 단위, 원)				
	점용를	물의 종류		단위 기간 단위	점용료
	전주, 가로등, 그		10 E 11	112 211	850
 전주, 공중 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지중배전용기기 자함, 발신전용 기, 우체통, 소화 유사한 것	1개	1년	1,250	
	공중전화, 그 투	 박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송전탑,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지름 ().1미터 이 하	길이	1년	200
	관 송열관 농업 용수관 작업구 (만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자름 0.1미터 초과 0.2미터 olb			400
		자름 0.2미터 초과 0.4미터 이 하			850
		지름 0.4미터 초과 0.6미터 이 하			1,250
		지름 0.6미터 초과 0.8미터 이 하			1,650
		지름 ().8미터 초과 1.0미터 이 하	1미터		2,050
		자름 1.0미터 초과 2.0미터 이 하			3,100
2. 수도관, 전		자름 2.0미터 초과 3.0미터 이 하			5,200
력구, 지중정착		지름 3.0미터 초과			7,250
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지름 ().1미터 olb			300
중 사이메결물		자름 0.1미터 초과 0.2미터 이 하			600
	지중정착장치(어 스앵커), 암커,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것	지름 0.2미터 초과 0.4미터 이 하	길이 - 1미터	1년	1,250
		미터지름 0.4미터초과 0.6m이하			1,850
		자름 0.6미터 초과 0.8미터 이 하			2,500
		지름 0.8미터 초과 1.0미터 olb			3,100
		미타자름 1.0미터 초과 2.0미터 이하			4,600
		자름 2.0미터 초과 3.0미터 olb			7,750
		지름 3.0미터 초과			10,850
3. 주유소·주 차장·여객자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동차터미널 · 화물터미널 · 자동 차 수 리 소 · 승강대 · 화물적치장 · 휴게소, 그 밖 에 이와 유사 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진입로·출인 그 밖의 것	로	점용면적		토지가격에 0.02 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 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4를
4. 철도·궤도, 그	. 밖에 이와 유시	l한 것	1제곱미터	1년	곱한 금액
		1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지 하실(「건축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법」 제2조 제1항제2호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독도 시 「국토의 계 획 및 이용 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 6 1 조 제 1 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 우만 해당한 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것	그 밖의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판을 포함한 다), 사설안내	간판(돌출간	일시 설치한 것(1개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다)	그 밖의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20,700
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돌출간판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9,900
것	사설안내표지		1개	1년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 치한 것 그 밖의 용도	표시면적 - 1제곱미터	1일	50 150
	아치	도로횡단 그 밖의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41,400 20,700
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 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 금기·상품진열대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	. 바하. : 메기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일	150
등의 공사용 시설		그 밖의 것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 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 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 다)		점용면적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 탁판매를 위한 시설	점용면적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에서 규정한 물·물건 및 /		주택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5 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 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 평균가격으로 한다.
- 2.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3.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4.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 →1,900원).
-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 8.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126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상위법령 위반사항 및 중복·재기재 사항을 정비하고,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법제처 개선권고 사항 정비

2. 주요내용

- 가. 법령 개정사항 반영함(안 제명 및 제2조·제4조)
 - 제명: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위원회 명칭: 거창군 옥외광고<u>정비기금</u> 운용심의위원회 ⇒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 나. 법령 재기재 사항 삭제(구 조례 제2조, 제3조제1항제1호·제3호, 제5조제1호~제3호, 제10조~제13조)
 -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위원회의 기능
 - 기금운용계획, 회계관계공무원
 - 기금의 결산, 관계규정의 준용 등
- 다. 기금의 용도를 상위법의 위임취지에 맞게 정비(안 제2조)
- 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부합되게 위원 구성 정비함(안 제4조)
 -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 규정 신설
- 마. 일반적인 위원회 규정상 필요한 사항 신설함(안 제5조·제6조)
 - 위원의 위촉해제,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 바. 위원회·기금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종전의 위원회·기금 명칭을 개정 조례에 따른 위원회·기금으로 보는 경과조치 규정 신설 (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2018년 예산 4,600천원
 - 기금 운영비: 4,600천원(사무관리비 2,800, 보상금 1,800)
 - ※ 기금 예치금: 276,867천원
 -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7. 9. 22.~10. 12.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경남도내 조례개정 현황
 - 개정완료: 김해, 남해, 고성, 창원, 창녕, 거제, 함안, 진주, 양산
 - 개정 중: 의령
 - (7) 법제처 입법컨설팅 사례 반영함.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거창군 옥외광고발전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용도를 정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경관개선사업
-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 3. 간판 제작·설치 지침 개발사업
- 4. 그 밖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이정하는 사업
-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 계좌로 관리한다.

- ②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4조(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축과장이 된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문화관광과장, 거창읍장
- 2.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명 이상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2. 옥외광고 관련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 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옥외 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옥외 광고정비기금 및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및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 위원회로 본다.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127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법령위임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하여 토지효율성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규제완화 과제정비**

2. 주요내용

- 가.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율 완화(안 제53조제6항·제58조제3항)
 - 기존에 정한 건폐율·용적율의 100분의 115까지 완화, 다만 법 제77조· 제78조에서 정한 건폐율·용적율의 최대한도 초과할 수 없음
- 나. 상업지역(중심, 일반, 유통) 내 생활숙박시설 허용기준을 완화 (안 별표 7, 별표 8, 별표 10)
 -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허용기준을 준주거지역 경계가 아닌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으로 경계 완화
- 다. 상업지역(중심, 일반, 근린) 내 공동주택 면적 비율 규제 완화(안 별표 7~별표 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련 법률 시행령」별표 8제1호나목, 별표 9 제2호나목, 별표 10 제2호가목에 따라 적용, <u>조례로 위임되어 정한 규제</u> 강화 부분 삭제함.
 - (현행) 70퍼센트 ⇒ (변경) 90퍼센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8~별표 11
 -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17.10.16./원안의결)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7. 9. 22.~10. 12.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5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100분의 115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제5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5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00분의 115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별표 7부터 별표 10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40퍼센트 이하	1
2. 제2종전용주거지역: 40퍼센트 이하	2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3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5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6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7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8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9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0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1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4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7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19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0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21
(2~5) (생략)	②~⑤ (현행과 같음)
<u> </u>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5항에 따라 자스며 즈태이 겨우 제1항에 따르
	<u>따라 장수명 주택의 경우 제1항에 따른</u> 건폐율의 100분의 115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기계 교수된 소기된 1 取기.

현 행	개 정 안
제5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5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80퍼센트 이하	1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20퍼센트 이하	2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3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4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5
6. 준주거지역: 400퍼센트 이하	6
7. 중심상업지역: 1000퍼센트 이하	7
8. 일반상업지역: 800퍼센트 이하	8
9. 근린상업지역: 600퍼센트 이하	9
10. 유통상업지역: 600퍼센트 이하	10
11. 전용공업지역: 250퍼센트 이하(다만,	11
산업단지 내 공장은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12. 일반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다만,	12
산업단지 내 공장은 350퍼센트 이하로	
한다)	
13. 준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다만,	13
산업단지 내 공장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14. 보전녹지지역: 50퍼센트 이하	14
15. 생산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5
16. 자연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6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7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19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0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21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u><신</u>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5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00분의 115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7호 관련)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로서 공동주택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미만인 것]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 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4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창고는 제외한다.
-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8호 관련)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기계식 세 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는 제외한 다.]
-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정비공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
-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작물재배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은 제외한다)
-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9호 관련)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 -한다]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하다)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같은호 가목은 제외한다)
-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기계식세 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판매소는 제외한다.]
-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작물재배사, 종묘 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은 제외한다)
-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10호 관련)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기계식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판매소는 제외한다.]
-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은 제외한다)
-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128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법령위배 소지가 있는 규정과 법령 재기재 사항 등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 법제처 개선권고 사항 정비

2. 주요내용

- 가. 법령에 규정된 사항 삭제함(구 제2조·제3조·제8조)
 - 수돗물평가위원회 기능, 위원 수, 위원 자격
 - 수질검사 실시 횟수, 실시 기관 등
- 나. 위원의 임기 중 연임 제한 규정 신설함(안 제3조)
- 다. 수질검사 공표방법 및 공표 시 포함사항 삭제함(구 제9조·제10조)
 -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기능과 별개의 사항이므로 삭제
- 라.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순서 조정함(안 제3조·제4조·제5조·제6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수도법」제30조, 「수도법 시행령」제49조의2
 - 나. 예산조치: 2017년 예산 3,080천원
 - 다. 합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7. 9. 22.~10. 12.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도내 개정(4):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창녕군
 - (7) 법제처 입법컨설팅: 전부반영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①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 ② 간사는 상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수돗물의 수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기획감사실-11352호(2016.08.23.) 「2017년 예산편성을 위한 기준경비통보」에 근거하여(위원회 참석수당 70천원)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민간위원 11명을 대상, 분기 1회(총 4회) 회의 추진 시 연 3,080천원의비용이 필요함.

4. 작성자 수도사업소장 박 종 권